

# 글로벌 다큐멘테이션

## 서비스 기본 계약서

(Master Services Agreement)

## 글로벌 다큐멘테이션 서비스 기본 계약서

### 1 거래문서(Relationship Documents)

1.1 거래문서는 거래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체결한 모든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기존의 합의를 대체합니다.

### 2 권한

2.1 고객은 은행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수락할 수 있는 수권자 변경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기 전까지는, 교신 및 지시서 송부나 조치 이행을 위해 고객이 수권자(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행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로 지정한 자의 권한에 의존 할 수 있습니다.

### 3 교신, 지시서 그리고 보안 절차

3.1 양 당사자는 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은행이 제공한 통신 채널에 접속하여 동 채널을 통해 지시서 또는 교신을 발행함과 동시에 보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은행은 동 지시서 또는 교신을 수령하는 즉시 보안 절차에 따라 이들의 유효성을 확인 합니다. 은행은 고객을 대신하여 지시서 또는 교신을 송부한 자의 권한 또는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의존하기 위해 마련된 보안 절차에 따르기로 하며, 그 외의 다른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3.2 고객이 제 3 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등의 경우 고객은 해당 지시서의 정확성, 완전성 및 올바른 전송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지시서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3 은행이 고객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고객은 고객의 요청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고객이 야기한 오류 및 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계좌 이름이 제공된 경우라도 은행 식별 번호나 계좌번호에 의해서만 지시서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3.4 만일 지시서의 합법성, 출처 또는 권한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은행이 이러한 확인 작업으로 인하여 지시서가 거부되거나 해당 처리 일자 또는 기타 합의된 시한을 넘겨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 이를 최대한 신속히 통지합니다.

3.5 은행은 고객의 지시서 변경 또는 취소 요청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은행이 이러한 요청에 응한 경우 고객은 해당 지시서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6 만일 은행이 수동조치로 전달된 지시 (즉, 통신 채널을 통해 전달되지 않은 지시서, 예로,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인편을 통해 전달)를 수락하고, 해당 보안 절차에 따라 이행한 경우 고객은 이와 관련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7 제 3.1 조에서 3.6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만일 고객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지시서를 은행이 이행하였다면,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시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a) 은행이 보안 절차에 따라 지시서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b) 은행이 보안 절차에 따라 지시서를 이행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으나, 고객이 해당 지시서가 다음 명시된 자에 의해 야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i) 지시서 또는 해당 보안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 (ii) 고객의

영업장소, 설비, 시스템, 전송 시설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한 자 또는 (iii) 고객의 통제 하에 있는 출처로부터 보안 절차 위반을 촉진한 정보(암호나 패스워드 등)를 입수한 자.

본 조항 (a)와 (b)에 명시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상기 지시서와 관련하여 지급을 이행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급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8 은행은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 시통신 채널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은 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중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 4 입금과 출금

4.1 만일 오류로 또는 자금 수령을 예상하고 계좌에 입금 처리가 되었으나 예정대로 자금이 수령되지 않아 해당 입금 처리를 정정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입금에 부리된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정하고, 은행의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금액을 출금 또는 동 금액의 즉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2 (a) 만일 지시서 이행으로 인하여 (i) 은행의 승인없이 계좌가 초과 인출되거나, (ii) 합의된 또는 기 약정된 당좌대월한도가 초과되거나 또는

(b) 고객의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청구한 지급정지 명령과 같은 제 3 자의 강제 집행권리가 실행된 경우,

은행은 고객의 지시서에 따른 출금거래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4.3 고객이 여러 건의 지시서를 송부하여 이에 따라 고객의 계좌에서 초과 인출이 발생하거나 기약정된 당좌대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출금 순서나 출금을 전부 처리할 것인지 혹은 일부 처리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4 이유를 불문하고 은행의 승인없이 고객의 계좌에서 초과 인출이 발생하거나, 기약정된 당좌대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즉시 해당 계좌의 초과 인출상태를 해소하거나 기약정된 당좌대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계좌가 초과 인출상태가 되는 것이 은행이 고객의 해당 계좌에 대해 당좌대월을 제공하거나 또는 당좌대월 한도를 증액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은행과 고객 간 체결된 합의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여신제공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명세서

고객은 계좌명세서나 거래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좌명세서 또는 거래보고 송부 후 30 일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30 일 이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통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예금 이자

고객의 계좌에 보유된 예금 잔액에는 보유 날짜와 해당 지침 또는 은행과 고객 간 합의에 따라 동 날짜에 적용된 이율로 예금 이자(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이자가 될 수도 있음)가 부리 또는 부과됩니다. 양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된 이율이 없는 한, 은행은 상기 이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은행은 고객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다음 명시된 사항을 인정합니다.

- (a) 은행의 이자 지급 금액은 세금, 공제, 원천징수액이 감액된 후의 금액이며,
- (b) 고객에マイ너스 이자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계좌로부터 징구할 이자를 지급 기일에 동 계좌로부터 출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금금액은 은행이 동 금액 전부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제, 원천징수 또는 기타 비용이 차감 되지 않도록 합니다.

## 7 담보권

고객은 은행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고객의 계좌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고객의 계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동의는 부당하게 유보 또는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 8 상계

은행은 변제기가 도래한 고객의 은행에 대한 채무와 은행의 고객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9 진술, 보장 및 확약

9.1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 (a) 각 당사자는 법인설립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으로 설립되어 존속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존속합니다.

- (b) 각 당사자는 거래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인의 권한 혹은 법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c) 각 당사자의 거래문서의 체결과 이행은 각 당사자의 설립관련 문서, 조직관련 문서, 정관, 각 당사자가 이행 당사자이거나 각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중대한 계약 및 증서 또는 법규에 따라 각 당사자에 부과된 의무, 제한 및 금지사항의 위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d) 거래문서의 조건은 각 당사자에게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는 의무이며, 이행 가능합니다.

## 9.2 고객은 다음을 확약합니다.

- (a) 고객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계좌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타 정보를 즉시 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의 모든 합리적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고객이 은행에 서면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의 변경을 통지하고 은행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기 전까지 은행은 고객이 기준에 제공한 문서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 (b)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된 또는 관련 문서, 지시서, 교신 및 지급 수단과 관련된 절도, 사기, 불법 활동, 손실, 피해 및 기타 오용을 인지하는 즉시 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

## 10 이행과 책임

10.1 은행은 은행업계의 기준과 관행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주의를 다하여 거래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10.2 양 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벌금, 과태료 또는 특별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한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인 손실

(b) (i) 이익 (실제 또는 예상 이익), (ii) 선의 또는 (iii) 사업 기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실

예견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러한 손실 또는 배상 가능성에 대해 통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0.3 은행은 일부 관할 지역의 지점을 통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와 관련된 은행의 모든 의무는 해당 지점이 운영되는 관할 구역에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의무는 그룹의 다른 지점 및 계열사에서 또는 이들에 대해 집행될 수 없습니다.

10.4 은행은 해당 통화로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달리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 또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지정한 중개기관은 해당 시간에 외환 거래의 규모와 종류에 대한 해당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환율을 이용하여 거래문서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이행과 관련된 환전을 이행 할 수 있습니다.

10.5 양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 또는 그룹 계열사의 거래문서에 명시된 의무 이행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지연 또는 불이행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최대한 신속히 상대방에 해당 사유 발생을 통지해야 합니다.

(a)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의 지시서 또는 교신 이행 및 기타 의무의 이행 그리고

(b) 고객의 의무 이행은,

불가항력으로 제약을 받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불가항력으로 제약을 받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10.6 은행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 제공업체(Infrastructure Providers)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감독 기관 또는 산업 기관의 지침과 절차 뿐만 아니라 인프라 제공업체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은행과 그룹 계열사는 인프라 제공업체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동 손실의 회복을 위해 고객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10.7 고객은 은행 또는 기타 그룹 계열사가 거래문서에 따라 지시서를 처리하거나 또는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제 3 자로부터 발생 또는 요구되는 직접적 손실로부터 은행과 그룹 계열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손실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8 고객, 은행, 그리고 그룹 계열사는 거래문서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고객, 은행, 그룹 계열사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문서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11 수수료

11.1 고객은 서비스에 대하여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11.2 은행은 고객에 합리적인 통지를 함으로써 또는 고객과 합의한 즉시 수수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1.3 은행은 고객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계좌에서 고객이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수수료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11.4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 11 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수수료에는

- (a) 부가가치세, 판매세, 이용세, 정부세, 영업세, 인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 (b) 이러한 수수료는 어떠한 공제, 원천징수, 상계, 반대청구 또는 기타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행이 동 수수료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

11.5 세금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없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수수료 전액과 동일한 금액이 은행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액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12 변경과 양도

12.1 은행은 고객에 서면 통지를 하여 거래문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서면 통지 송부일로부터 60 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12.2 제 12.1 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문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해당 서면 통지 상의 조건에 따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최대한 미리 통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2.3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러한 거래문서에 따른 의무를 양도하거나 권리를 이전할 수 없고, 상대방은 이러한 서면 동의를 부당하게 유보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고객의 동의 없이 다음 대상에게 은행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a) 그룹의 계열사, 또는

(b) 합병, 통합, 은행의 지분 자본 자산이나 거래문서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부분 또는 전체의 처분 이후 은행의 승계자 단, 이러한 양도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13 해지

13.1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30 일 전 사전 서면 통지로써 거래문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의 경우 상대방에 30 일 전 사전 서면 통지로써 모든 서비스를 철회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는 관련 거래문서의 기간 종료 즉시 변제되어야 합니다.

13.2 일방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거래문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의 경우 모든 서비스를 철회하거나 계좌를 즉시 해지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a) 상대방이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를 법규준수 의무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노출 시키는 등 은행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경우.

13.3 해지는 제 1 조, 3.5 조, 10 조, 12.3 조, 13.1 조, 13.3 조, 14-20 조 그리고 CARA 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14 권리의 포기

계약 당사자가 거래문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의 행사를 지연했다 하더라도 해당 당사자는 추후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상황에만 한정됩니다.

## 15      분리 [개별적용]

거래문서의 각 조항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조항이 해당 국가에서 또는 특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 효력 상실 또는 이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해당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분리되어 적용되며, 나머지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 16      제 3 자 권리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거래문서의 당사자가 아닌 자(그룹 계열사 제외)는 법률에 따라 그러한 권리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문서의 조건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 17      통지

(a) 은행이 송부한 서면 통지는 고객이 신청서 양식에 기재한 주소로 도달된 경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b) 고객이 송부한 서면 통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가장 최근 명세서에 명시된 은행의 주소로 송부된 경우 효력을 발휘합니다.

각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할 통지의 주소를 포함하여 거래문서에 따른 통지 송부를 위해 유효한 다른 주소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8      준거법과 관할법원

18.1 거래문서 그리고 거래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계약적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부속계약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계좌가 개설되거나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18.2 양 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준거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관할법원을 비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19 전자 서명

은행이 고객에게 은행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전자적인 방법(디지털 또는 전자 서명의 사용 또는 기타 형태의 전자 동의를 포함)을 제공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동의는, 이러한 동의의 사용 전 고객에 제공된 추가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고객의 서면 동의 제출과 동일한 완전하고 구속력 있는 동의를 구성합니다.

## 20 정의

- 계좌(Account)란 거래문서에 따라 고객이 개설할 또는 개설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 개별부속약정 (Annex)은 해당 서비스 부속계약서 또는 서비스 기본 계약서(MSA)에서 제공되는 특정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 조건을 명시한 개별부속약정을 의미합니다.
- 개별추가문서 (Appendix)는 해당 서비스 부속약정(Annex)에서 제공되는 특정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 조건을 명시한 개별추가문서를 의미합니다.

- 신청서 (Application Form)는 거래신청서(Relationship Acceptance Form)와 서비스 변경신청서(Service Amendment Form)등,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모든 양식을 의미합니다.
- 수권인 (Authorised Person)은 제 2 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은행에 확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 당국(Authority)이란 해당 당사자 또는 그룹 계열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법, 행정 및 감독 기관, 정부 및 공공 기관, 기구 또는 당국, 조세당국, 증권 및 선물거래소, 법원, 사법집행기관, 또한 이들의 대행기관을 의미합니다.
- 은행이란 신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 계열사를 의미합니다.
- CARA 는 비밀정보, 고객 정보 및 세금관련 법규준수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한 본 서비스기본계약서(MSA)의 부속약정을 의미합니다.
- 조항이란 거래문서에서 사용되는 경우 달리 규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 한, 거래문서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 교신(Communication)이란 지시서를 제외한 고객과 은행 간의 모든 형태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 통신 채널(Communication Channels)이란 거래문서 및 기타 관련 조건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고객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 시스템, 플랫폼 및 통신 채널(예: HSBCnet)을 의미합니다.
- 법규준수 활동 (Compliance Activity)이란 범죄의 예방 및 조사, 국내외 지침, 그룹의 관련 절차 또는 그룹 계열사의 유관기관(정부기관, 감독 기관 또는 산업 기관 등)의 지시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된 법규준수 의무(Compliance Obligation) 이행을 위하여 은행 또는 그룹의 기타 계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법규준수 의무(Compliance Obligations)란 다음을 준수해야 하는 그룹 계열사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a) 법률, 국제 지침, 그리고 은행의 정책 및 절차 (b) 당국의 요구, 법률에 따른 보고, 거래 보고, 공시 또는 기타 의무 또는 (c) 은행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란, 업무, 운영, 개인정보 또는 공개 주체인 계약당사자 또는 그룹 계열사의 고객 그리고 거래문서의 조항 등을 포함하여, 각 계약당사자 또는 그룹의 계열사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령하거나 접근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관련자 (Connected Person)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그룹 계열사에게 그 정보(개인 정보 또는 조세 정보)가 제공되거나 또는 그룹 계열사가 동 정보를 수령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그룹계열사의 법규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세당국에 제공되어야 하는 조세 정보가 요구된다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고객의 소유자, 지배자, 실질적인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 국가별 부속계약 (Country Conditions)은 각 관련 국가에 대해 거래문서를 보완 또는 개정하는 구체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 고객 (Customer)이란 신청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기재된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고객 정보(Customer Information)란 고객 또는 관련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밀정보 또는 조세 정보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Legislation)은 당사자가 관련된 모든 관할권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법률을 의미합니다.
- 수수료란 은행의 표준 수수료 또는 은행과 고객 간에 별도로 합의된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및 경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고객이 거래문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체 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합리적으로 신의성실에 따라 결정하는 이자 및 요금도 포함됩니다.
- 금융 범죄 (Financial Crime)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뇌물수수, 부패, 탈세, 사기, 경제 또는 교역 부문의 제재 회피 또는 위반 또는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법규를 우회하거나 위반하기 위한 시도를 의미합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 (Force Majeure Event)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그 당사자의 거래문서 준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홍수, 폭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 (b) 전쟁, 시민 소요나 테러 행위
  - (c) 노동쟁의 행위
  - (d) 천재지변
  - (e) 정부나 정부 기관의 조치
  - (f) 법률 변경(또는 법률에 대한 해석의 변경)
  - (g) 전력 또는 설비 고장이나 중단
  - (h) 인프라 제공업체에 의한 교신 또는 지시의 수령이나 이행의 중단, 실패 또는 지연,

단, 항상 이러한 사유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거래문서의 미준수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술과 주의로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당사자가 은행일 경우 이는 업무연속성 비상계획의 실시를 포함합니다.

- 그룹 (Group)은 HSBC 지주회사, 그 자회사, 관련 법인, 관계사 그리고 이들의 지점 등을 의미합니다.
- 인프라 제공업체 (Infrastructure Provider)란 통신, 청산 및 결제 시스템 또는 중개 은행, 환거래 은행 등, 계약 당사자가 거래문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시장 인프라를 제공하는 제 3 자를 의미합니다 (은행의 하도급 업체 또는 대리인 제외).
- 지시서(Instruction)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이 받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의미합니다 :
  - (a)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조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 (b) 수권인이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또는 그 출처가 고객인 지시
- 법 또는 법률(Law)이란 국내외 관련 법령, 법규, 조례, 규칙, 판결, 칙령, 자발적 규정, 명령, 제제 조치, 법원 명령, 그룹 계열사와 당국 간에 체결되어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에 적용되는 합의 또는 당국 간 합의를 의미합니다.
- 손실(Loss)은 예견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손실, 피해, 책임, 비용, 배상청구, 요구액 및 비용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기본계약서(MSA)란 본 서비스기본계약서를 의미합니다.
- 당사자 (Party)는 고객 또는 은행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은 고객과 은행을 함께 의미합니다.

- 개인 정보 (Personal Data)는 개인과 관련되고 해당 개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정보 그리고 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타 정보를 의미합니다.
- 목적 (Purposes)이란 비밀유지와 규제에 관한 부속약정 (CARA) 제 2.2 조항에 명시된,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가 고객 정보를 처리, 이전 및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 거래신청서 (Relationship Acceptance Form)는 고객이 은행의 서비스 제공에 합의한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 거래문서란 보조 약정과 기본계약서(우선순서대로)를 의미하며, 수정본 및 보충본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 보안 절차(Security Procedures)란 통신 채널에 대한 고객의 접근을 규율하고, 동 채널을 통해 은행과 고객 간 전송되는 지시서 또는 교신의 출처를 확인하는 보안 절차 또는 통신규약과, 수동조치로 전달된 지시서(manually initiated Instruction)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변경신청서 (Service Amendment Form)는 신청서를 맺은 이후에 고객이 은행의 추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 (Services)는 거래문서에 따라 은행과 그룹 계열사에 의해 제공되고 신청서에서 요청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 부속계약서 (Services Schedule)는 본 계약서의 조건들을 포함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부속계약서를 의미합니다.
- 보조 약정 (Supporting Documents)은 국가별 부속계약, 개별부속약정, 신청서, 개별추가문서, 서비스 부속서를 포함한, 특정 국가에서의 서비스의 수령 및 유지와

관련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모든 문서, 계약서 또는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 조세당국 (Tax Authorities)이란 국내외 세금, 수입, 금융 관련 당국을 의미합니다.
- 조세 정보 (Tax Information)란 은행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룹 계열사의 조세 당국에 대한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고객, 고객의 소유자, 지배력을 가진 자(controlling person), 또는 실제 소유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비밀유지와 규제에 관한 부속약정(Confidentiality and Regulatory Annex)**

### 1      비밀정보의 공개

1.1     본 부속약정 제 1 조, 제 2 조, 제 6 조에 따라, 당사자는 모든 비밀 정보가 비밀로 유지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각각의 정책 및 절차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전자 메일, 전화 통화 및 웹사이트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녹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거래문서와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 및 절차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이러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2     고객은 은행의 비밀 정보를 다음 대상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각 그룹 계열사, 서비스 제공업체, 수탁업체, 대리인 및 인프라 제공업체(Infrastructure Provider) 단, 고객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상 거래문서에 따른 서비스 수령과 관련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b) 당국, 감독 및 감사기관 또는 전문 자문인 또는 법규, 법원의 명령 및 당국으로부터의 구속력 있는 요청 또는 당국과 체결된 합의에 따라 정보 공개가 요구되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경우 그리고,

(c) 은행이 서면 동의한 기타 제 3 자.

1.3 일방 당사자에 의한 비밀정보 공개의 제한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거래문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일반에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되는 정보.
- (b) 제 3 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수령한 정보 또는 이미 수령당사자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 각각의 경우 해당 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한 통지 또는 의무가 없는 정보, 또는
- (c) 정보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수령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

## 2 고객정보(비밀 정보 포함)의 수집과 사용

### 2.1 수집

그룹 계열사는 고객을 대신하는 자로부터 받은 고객의 정보(고객정보)를 수집, 이용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 또는 그룹 계열사를 대신하는 자는 기타 출처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그룹 계열사에 제공된 다른 정보와 함께 생성 또는 결합할 수 있습니다.

### 2.2 처리와 제공

고객정보는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에 의해 다음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처리, 전송 그리고 제공될 것입니다.

- (a)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은행이 고객의 요청 또는 허가에 따른 거래를 승인, 관리, 처리 또는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b) 법규준수 의무의 이행
- (c) 법규준수 활동의 이행

- (d) 고객으로부터 연체 및 미지급 금액을 회수
- (e) 신용 조회, 신용정보 획득 또는 제공
- (f)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의 권리 행사 또는 보호
- (g) 은행 또는 그룹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신용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상품 개발, 기획, 보험, 감사 및 행정 용도 등을 포함)
- (h) 은행 고객과의 전반적인 관계 유지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은행이 상기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다음 명시된 수령자가 어디에 소재하는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정보보호법이 없는 국가 등을 포함) 동 수령자에게 고객정보를 이전하고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들 수령자는 동 목적을 위해 상기 고객정보를 처리, 이전 그리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 그룹 계열사
- (b) 그룹의 외주업체, 대리인, 서비스 제공업체, 제휴회사 (이들의 임직원 및 이사를 포함)
- (c) 당국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 (d) 고객, 인프라 제공업체, 수취인, 수익자, 계좌 지정인, 대리 은행, 거래상대방, 원천징수 대리인, 스왑 및 거래 예탁기관, 주식 거래소, 고객이 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은행이 고객을 위해 이러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대행하는 자
- (e) 서비스에 대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지분을 획득하거나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래의 당사자

(f) 신용정보를 획득 또는 제공하는 경우의 금융 기관, 신용조회기관, 신용정보회사 2.3  
고객정보의 보호 그리고

(g) 잠재적 지급인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은행의 확인. 이 경우 해당 잠재적  
지급인,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이를 대리하는 자에 대한 고객 계정 정보로 제한됩니다.

### 2.3 고객정보의 보호

고객정보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처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는 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그 직원 그리고 제 3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엄격한  
비밀보장 및 보안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 고객정보는 그룹이 개인정보와 유사한 성격의  
그룹 자체 비밀정보 관리에 적용하는 보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 3 고객의 의무

3.1 고객은 그룹 계열사에게 정보(개인 정보 또는 세금 정보를 포함)가 제공된 각  
개인이 거래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본인의 정보가 처리, 공개 그리고 이전됨을  
통지받았고(혹은 적절한 때에 통지받을 것임), 이에 동의함을 확인하고 보장하며 이를  
확실히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개인에게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수정 권한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2 만일 고객이 고객 또는 고객의 관련자의 조세 정보와 요구될 수 있는 이에 따르는  
진술서, 포기서 및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 또는 그 관련자에  
대하여 조세당국에 보고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은행 등은 조세당국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해당  
조세당국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4 세금관련 법규준수

고객은 조세 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관할권에서의 고객의 조세의무와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가 제공하는 계좌 개설 및 이용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세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객은 서비스에 따라 은행이 지급, 이체 또는 보유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고 적절히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에 예치된 자산 그리고 동 자산으로 인해 산출되는 수입을 해당 조세당국에 보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5 법규준수 활동 (Compliance Activity)

은행 그리고 그룹 계열사의 서비스 제공은 법규준수 활동(Compliance Activity)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법규준수 활동으로 은행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받을 경우 또는 법규준수 활동의 결과로 은행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는 고객과 은행 간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국가별 부속계약 (대한민국)**

다음은 은행과 고객 간에 체결되는 해당 거래 문서를 개정 그리고/또는 보완하는 특약 (“국가별 부속계약(대한민국)”)으로, 은행이 대한민국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1 해석

거래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두 버전 간 상충이 생기는 경우에는, 한국어 버전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2 실명 거래

고객은 거래문서에 따른 모든 거래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은행이 실명 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3 보충약관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거래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됩니다.

## 4 책임

거래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를 면책하지 않습니다.

## 5 수수료

은행은 기본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에 따른 수수료의 변경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을 통해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지합니다.

## 6 해지

기본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거래문서를 해지, 서비스를 철회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

### 1. 거래 문서

1.1.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는 서비스 기본 계약서 조건에 대한 부속 계약서로 서비스 기본 계약서(MSA) 조건에 포함된다.

1.2.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는 E-Channel Profile 과 액세스 되는 서비스(Accessed Services)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1.3. 본 부속계약서에서 사용되나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기본 계약서의 정의를 따른다.

## 2. 활동

2.1. 고객(고객 및 계좌주를 대신하여)은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 및 수신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목적 또는 다음과 관련된 활동 수행을 위해 통신을 송부 및 발행 할 수 있다.

### 2.1.1. 고객 또는 계좌주

### 2.1.2. 고객 또는 계좌주에게 제공되는 계좌, 상품 및 서비스

고객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정보 조회, 어플리케이션 시작, 주문, 지시서 작성(거래 및 지급 지시서 등) 또는 약정, 변경(예: 주소 변경), 액세스 되는 서비스 추가, 변경 및 삭제, E-Channel Profile 에 연결되지 않은 계좌 관련 증명서 또는 보고서 요청, 자금 인출 및 계약 체결 등이 있다.

2.2. 계좌주는 단독으로 본인과 관련된 액세스 되는 서비스를 E-Channel Profile 에 추가 또는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은 요청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동 요청을 이행한다.

## 3. 지시서와 통신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시 또는 통신을 승인된 것으로 취급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은행 또는 다른 그룹 계열사가 동 고객 또는 관련 계좌주로부터 이러한 지시 또는 통신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승인 문서 또는 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 4. 지정 이용자와 제 3 자

4.1. 고객은 이용자 및 (해당되는 경우) 제 3 자를 지정할 책임이 있으며 은행은 이들을 E-Channel Profile 을 통해 또는 E-Channel Profile 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을 대표하고 고객을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취급할 수 있다. 고객은 지정 이용자 및 (해당되는 경우) 제 3 자의 액세스, 권한 및 한도(해당되는 경우)를 설정하고 이것이 고객 또는 계좌주의 관련 권한 및 내부 통제장치를 반영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고객은 지정 이용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 3 자가 이란, 북한, 시리아 또는 해당 시점에 제재 대상인 기타 영토에 설립되어 있거나 이러한 위치에서 E-Channel Profile 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4.3. E-Channel Profile 과 관련하여 그룹 계열사가 지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모든 통신 (액세스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고객이 수신한 것으로 간주된다.

4.4. 고객은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4.4.1. 은행과 제 3 자와의 상호 작용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E-Channel Profile 에 대한 모든 액세스는 고객 대리인의 자격으로만 제공된다.

4.4.2. 은행은 제 3 자가 참여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인 정보 보호 고지의 최신 버전을 제 3 자에게 제공한다(은행이 제 3 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개인 정보 보호 고지는 제외).

4.4.3. 고객은 모든 지정 이용자가 그룹의 요구 사항, 지정 이용자에게 적용할 것이 명시된 또는 이들이 참여하는 활동과 관련된 거래 문서 및 보안 조치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5. 액세스 되는 서비스(Accessed Service)와 E-Channel Profile 에 대한 변경

5.1. 은행은 재량에 따라 E-Channel Profile 에 (또는 이로부터)액세스 되는 서비스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제공한다.

5.2. 은행이 액세스 되는 서비스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제 5.1 항에 따라 E-Channel Profile 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고객은 지정 이용자가 이러한 변경 부분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고객의 동의를 구성하게 됨을 인정한다.

## 6. 보안 조치와 보안 통제 장치

6.1. 고객은 보안 통제와 관련이 없는(예: 시스템 호환성 또는 운영 체제 관련) 지시 등, 은행이 발행하는 합리적인 지시를 따른다.

6.2. 은행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E-Channel 의 보안 지원 및 강화를 위해 언제든지 보안 조치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에 가능한 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7. 라이선스

7.1. 은행과 기타 그룹 계열사는 E-Channel 과 액세스 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 및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다.

7.2. 은행은 자사 또는 그룹 계열사를 대신하여 E-Channel Profile 제공기간 동안 고객에게 은행이 고객에게 통신한 제한사항에 따른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하며 재실시가 불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본 서비스 부속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예상되는 목적(총칭하여 “허용된 목적”)으로 E-Channel Profile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7.3.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고객은 E-Channel 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변경, 복사, 수정, 역설계, 분해, 디컴파일, 디코딩, 개조, 오류 수정 또는 소스 코드를 파생 및 액세스 시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7.4. 고객, 제 3 자 또는 지정 이용자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고객, 제 3 자 또는 지정 이용자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가 해당 피드백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소유(그리고 고객은 이에 따라 은행 또는 해당 그룹 계열사에게 할당하며, 제 3 자 또는 지정 이용자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함에 동의하며, 제 3 자 또는 지정 이용자(해당되는 경우)도 이에 동의하도록 한다. 은행과 그룹 계열사는 고객, 제 3 자 또는 지정 이용자(해당되는 경우)의 신원을 제외하고 해당 피드백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7.5. 고객과 관련 제 3 자 또는 지정 이용자는 모든 피드백을 비밀로 유지하고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해야한다.

## 8. 책임

고객은 은행의 지시서를 위반하는 E-Channel Profile 액세스, 사용 또는 통합(해당되는 경우)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

## 9. 내보내기 (Export)

데이터, 상품 또는 데이터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 라이선스, 허가 또는 동의(각각을 ‘동의’라 함) 및 당국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동 이전을 이행하기 전 필요한 동의를 획득하고 관련 당국에 통지한다. 고객 또는 은행(해당되는 경우)은 요청 시 이러한 동의 획득 또는 통지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요청 당사자가 부담한다.

## 10. E-Channel 중단

은행은 관련 제 3 자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E-Channel 일부의 제공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가능한 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11. 상충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액세스 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계약서보다 거래 문서가 우선 적용된다.

## 12. 효력 유지

서비스 부속 계약서 해지 시에도, 제 7.4 조, 제 7.5 조, 제 8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해지는 해지일까지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책, 의무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3. 정의

- 액세스 되는 서비스(Accessed Service)란 E-Channel Profile 을 통해 액세스 또는 사용되는 계좌,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계좌 관련 등을 포함). 액세스 되는 서비스에는 별개의 약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타 그룹 계열사가 액세스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계좌주란 은행이 고객에 정보를 송수신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용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 통신 채널(Communication Channels)이란 E-Channel Profile 을 의미하며 서비스 기본 계약서에서 “통신 채널”이라고 언급되는 경우(정의된 용어인지 여부와 무관)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해석한다
- E-Channel 이란 그룹이 액세스 및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관련 디지털 뱅킹 시스템(예. HSBCnet), 부가 서비스 및 기술적인 도구를 의미한다.
- E-Channel Profile 이란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은행이 고객을 위해 구성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의 E-Channel 을 말한다.

- 피드백(Feedback)이란 E-Channel 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안, 코멘트, 정보, 아이디어 또는 피드백을 의미한다.
- HSBCnet 란 www.hsbcbet.com 을 통하여거나 HSBCnet 모바일 뱅킹 앱 등의 기타 액세스 포인트 및 수단을 통해 접속되는 그룹의 내부 뱅킹 플랫폼인 E-Channel 을 의미한다.
- 지시서란 E-Channel 또는 액세스 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신하는 통신을 의미하며,
  - (a)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 (b) 수권인(Authorised Person)이 제공하였거나 또는 그 출처가 고객(또는 은행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간주한다)이다.

서비스 기본 계약서에서 “지시서”가 언급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해석한다.

- 지적재산권이란 모든 종류의 지적 및 산업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특허, 발명, 상표권, 상호, 영업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및 웹사이트 주소에 대한 권리, 디자인, 노하우, 영업 비밀 및 비밀 정보에 대한 권리 (등록 여부, 어떤 국가 및 관할권에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현재 그리고 향후에 존재할 수 있는 유사한 또는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MSA 란 서비스 기본 계약서를 의미한다.
- 보안 조치란 보안 절차를 의미하며, E-Channel 과 관련된 필수 보안 요구 사항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충 문서로 은행이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 제 3 자란 E-Channel Profile 및 액세스 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지정 사용자 외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 지정 이용자란 고객이 본인을 대신하여 E-Channel Profile 액세스 또는 사용을 허락한 자로서, 은행은 서비스 기본 계약서 및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에 따라 지정 이용자의 권한 및 신원을 신뢰할 수 있다.

## **HSBCnet 개별부속약정**

### 1. 거래 문서

1.1. 본 개별부속약정은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조건에 대한 개별 부속약정으로 동 부속계약서에 포함된다.

1.2. 본 개별부속약정은 HSBCnet Profile 와 액세스 되는 서비스의 액세스와 사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 하고있다.

1.3. 본 개별부속약정에서 대문자로 표기되었으나(영문 기준) 정의가 되지 않은 용어는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정의를 따른다.

### 2. HSBCnet 이용자

2.1. 고객은 시스템 관리자가 다음을 이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2.1.1. 다른 시스템 관리자 및 HSBCnet 이용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들이 재위임(delegate)을 할 수 있다.

2.1.2. 다른 시스템 관리자 및 HSBCnet 이용자를 생성, 중지, 삭제 할 수 있다.

2.1.3. 보안 장치를 주문한다. 그리고

2.1.4. 다른 시스템 관리자 및 HSBCnet 이용자에게 한도 그리고/또는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에는 HSBCnet Profile 에서의 활동, 지시서 송부 그리고 통신 발행에 대한 허가 등이 포함된다.

2.2. 고객은 HSBCnet 이용자가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HSBCnet 이용자는 이러한 권한에 따라 고객을 대신(계좌주를 대신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는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 제 2.1 항에 따라 고객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

2.3. HSBCnet 이용자는 관련 온라인 이용자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만 HSBCnet Profile (및 기타 액세스 되는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 3. HSBCnet 통제장치

3.1. 통제 장치는 일반적으로 이중으로 제공되나 특정 통제 장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 기반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고객은 단독 기반 통제 장치를 선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다음 내용에 동의한다.

3.1.1. HSBCnet 이용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이로 인해 고객이 HSBCnet 이용자의 활동(계좌 관련 활동 및 지급 이행 또는 취소 등)을 통제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으며 고객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3.1.2. 은행은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송부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위험 경감 통제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3.2. 고객 또는 계좌주의 계좌에 자동 계좌 등록이 적용되는 경우, 고객은 다음에 동의한다.

3.2.1. 고객 및 계좌주 명의로 된 현재 그리고 향후 연결 가능한 모든 계좌들은 HSBCnet Profile 에 연결되며,

3.2.2. 이러한 계좌 연결 시 고객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3.2.3. 고객이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은행이 아닌 고객의 책임이다.

### 4. 정의

- HSBCnet Profile 은 E-Channel Profile 로서 고객을 위해 구성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의 HSBCnet Profile 을 의미한다.
- HSBCnet 이용자란 고객이 HSBCnet Profile 에 접속 또는 이용을 허용한 이용자를 의미한다.
- 시스템 관리자란 시스템 관리자로 임명된 HSBCnet 이용자로 일반 HSBCnet 이용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

## **통합 서비스 (Integration Service) 개별부속약정**

### 1. 거래문서

1.1. 본 개별부속약정은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조건에 대한 개별 부속약정으로 동 부속계약서에 포함된다.

1.2. 본 개별부속약정은 E-Channel 프로파일 및/또는 접근 서비스가 은행의 통합 서비스 제공 및/또는 API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 하고 있다.

1.3. 본 개별부속약정에서 대문자로 표기되었으나(영문 기준) 정의가 되지 않은 용어는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정의를 따른다.

### 2. 라이선스

2.1.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제 7.2 조항은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7.2 은행은 자사 또는 관련 그룹 계열사를 대신하여 E-채널 제품군의 관련 요소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고객에게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불가능하며 (통합 서비스 개별 부속 약정 제2.2 조항에 따라) 재허가가 불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 라이선스는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한 제한사항의 범위 내에서 적용을 받으며,, 아래 각 항목(통합 서비스 개별 부속 약정 제2.2 조항에 정의된 개발자의 허용 목적과 함께 총칭하여 "허용 목적"

이라 함)을 적절히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에 한한다:

7.2.1.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예상되는 목적을 위한 E-Channel Profile 그리고 해당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API Profile.

7.2.2 모든 자료. 단, 본 조항에 따라 테스트 시설, E-Channel Profile, API Profile, 접근 되는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 그리고

7.2.3 테스트 시설, 단 E-Channel 테스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2. 고객은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제 7.2 조항에 따른 권리를 다음 목적에 한하여(총칭하여 '개발자의 허용된 목적'이라 함) 개발자에게 재허가(sub-license) 할 수 있다.

2.2.1. 고객이 E-Channel 제품군 요소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2 고객을 대신하여 E-채널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내에 E-채널 프로파일 및/ 또는 API 프로파일을 통합하거나, 해당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은 은행이 어떤 개발자(Developer)에게도 E-채널 제품군의 어떤 요소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2.3. 데이터는 개발자의 허용된 목적(Developer's Permitted Purpose) 범위 내에서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3.1. 어떠한 개발자도 제3자 제공자 서비스(Third Party Provider Services)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기술 서비스 제공자(Technical Services Provid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3.2. 고객은 개발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제3자 제공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은행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4.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제 7.3 조는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고객은 E-Channel 제품군의 어떠한 부분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변경, 복사, 수정, 역설계, 분해, 디컴파일, 디코딩, 개조, 오류 수정 또는 소스 코드를 파생 및 접근하는 기타 시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5. E-Channel 제품군과 관련하여 개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기본 계약서의 상반되는 조항에 관계없이) 은행이 개발자의 허용된 목적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등을 요청 시 개발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6. E-Channel 서비스 부속계약서에서 "피드백"에 대한 정의는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피드백이란 E-Channel 제품군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안, 코멘트, 정보, 아이디어 또는 피드백을 의미한다.

2.7. 고객 및 모든 개발자는 고객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려는 E-Channel 제품군에 관련된 거래문서의 요건과 이에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한다. 만약 상충이 있는 경우, 거래문서가 다른 계약에 우선한다.

2.8. 은행이 E-Channel 제품군의 구성 요소에 대해 둘 이상의 버전을 발행하는 경우, 고객 및 모든 개발자에게 최신 버전을 사용하거나 해당 자료의 최신 버전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9.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개발자 또한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1. E-Channel 제품군 또는 데이터에서 파생된 이용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허용된 목적(Permitted Purpose)의 범위를 벗어나서(개발자의 경우, 개발자의 허용된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2.9.2. 제2.2조에 따라 고객과 개발자 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E-Channel 제품군의 구성 요소 또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재사용 허가(sub-license)하거나, 사용을 허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2.9.3. E-Channel 제품군 또는 데이터를 어떠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또는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단 사용하거나, 위반하는 방식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2.9.4. E-Channel 제품군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Initiative: [http://opensource.org](http://opensource.org)) 또는 Free Software Foundation: [http://www.fsf.org](http://www.fsf.org) 정의에 따름) 또는 유사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여, E-Channel 제품군의 구성 요소가 오픈소스 또는 유사한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 3. E-Channel 제품군 접근과 사용

은행은 고객에게 통합 테스트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고객의 E-Channel 제품군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문제가 HSBC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유지 관리 지원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 4. 책임

4.1 고객은 개발자의 작위 및 부작위 또는 타인의 E-Channel 제품군 사용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은행과 그룹 계열사를 면책한다.

4.2. 은행은 고객이 E-Channel 제품군 또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Loss)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3. 은행은 다음 각 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은행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그룹 계열사의 지시에 반하여 또는 허용된 목적을 벗어난 방식으로 E-Channel 제품군의 구성 요소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ii) 그룹 계열사가 아닌 자가 E-Channel 제품군의 구성 요소를 변경 또는 수정한 경우, 또는

(iii) 고객이 E-Channel 제품군 및 API의 구성 요소를 구현하지 않았거나,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구현한 경우

#### 5. 차단, 철수, 중지

5.1. E-Channel 서비스 부속 계약서 제 10 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은행은 유지보수를 위해, 또는 관련 제3자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 개발자가 제3자 서비스(Third Party Provider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 시 고객의 E-채널 제품군 전체 또는 일부 요소에 대한 접근

을 중단, 철회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합법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중단, 철회 또는 종료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 통지를 제공한다.

## 6. 제 3 자 권리

6.1 모든 그룹 계열사는 법률 그리고 거래 문서의 조건에 따라 본 개별부속약정 제 4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은행 또는 고객은 타인의 동의 없이 거래문서에 따라 본 개별부속약정을 수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과 은행 외의 제3자는 본 개별부속약정 상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6.2 제4조와 제6조의 내용은 서비스 기본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7. 효력 유지

본 개별부속약정가 해지되는 경우에도 제 1.1조, 제2.6조, 제2.7조, 제4조, 제5.1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효력은 유지된다. 본 개별부속약정의 해지는 현재까지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책, 의무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8. 정의

8.1. "API Profile", "E-Channel 제품군", "개발자(Developer)", "자료(Materials)", "테스트 설비 (Testing Facilities)"의 정의는 E-Channel 서비스 부속약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8.2. 본 부속서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PI란 그룹이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할 수 있는 접근 및 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e interfaces)와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 및 기술 도구를 의미한다.
- API Profile이란 각 API를 통해 은행이 지시를 수신하고 통신을 주고받는 E-Channel Profile을 의미하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의 API를 의미한다
- 애플리케이션 이란 고객이 E-Channel Profile 및 API Profile에 접근하고, 이로부터 이득을 얻고, 의존 또는 상호 작용하거나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이러한 고객을 위해 개발된 상품,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와 유사한 아이템을 의미한다.
- 데이터란 관련 메타데이터와 함께 E-Channel Profile 및 API Profile을 통해 전송, 수신,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고객 또는 개발자에 의해 파생되는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데이터에는 기밀 정보와 (i)고객 또는 계좌주, (ii)서비스 및 접근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된다.
- 개발자란 다음을 목적으로 고객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 자(기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를 의미한다.
  - (a) 고객이 E-Channel 제품군의 요소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b) 고객이 E-Channel Profile 및 API Profile에 접근하고, 이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의존 및 상호작용 또는 통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것을 지원한다.
  - (c) 고객이 E-Channel Profile 및 API Profile을 통해 시스템 및 페이로드(payload) 통합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b)와 (c) 조항을 합하여 E-Channel 테스트라함).

(d)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에 E-Channel Profile 및 API Profile을 통합하는 것 또는 이러한 통합을 유지하는 것을 촉진한다.

- E-Channel 제품군이란 API Profile, E-Channel Profile, 테스트 시설 및 자료(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HSBC 환경 이란 은행이 운영, 소유하거나 은행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 자료(Materials)란 고객에게 수시로 제공되는 사용자 지침, 이행 지침, 사양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 정보, 콘텐츠, 도구 또는 기타 자료를 의미한다.
- 기술 서비스 제공자(Technical Services Provider)란, 고객에게 제3자 제공자 서비스가 아닌 개정 지급결제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2015/2366) 제4조 제11항의 정의(수정본 포함)에 따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3자 및 지급결제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부속서 1 Part 2 제20항(수정본 포함)의 범위에 포함되는 활동을 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
- 테스트 설비란 고객이 자료에 접근하고 E-Channel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테스트 환경, 활동 또는 샌드 박스를 의미한다.
- 제3자 제공자 서비스(Third Party Provider Services)란 다음 각 항에 명시된 지급 개시 서비스(payment initiation services) 및 계좌 정보 서비스(account information services)를 의미한다.

(i) 개정 지급결제지침 2015/2366 부속서 1 제7항 및 제8항

(ii) 지급결제규정 2017 부속서 1 Part 1 제1(g)항 및 제1(h)항 및 관련 규제기관의 해당  
지침(수정본 포함)

## **금융기관 서비스 부속계약서 (Financial Institution Services Schedule)**

### **거래문서**

1.1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는 서비스 기본 계약서의 부속계약서로 서비스 기본 계약서  
약정을 포함합니다.

1.2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는 FI 서비스에 적용되는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3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에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영문기준)는 서비스  
기본 계약서의 정의를 따릅니다.

### **2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이 거래문서에 따라 서비스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예. 고객 계좌에 수표를 입금("Cash Letters")하거나 고객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Demand Drafts")하는 것 등)를 모든 금융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객은 특정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Cash Letter를 반환하고 Demand Draft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은행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결과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이나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환거래 서비스 (Correspondent Banking Services)**

고객이 환거래 서비스를 위해 계정 및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계정 및 서비스는 고객의 거래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관리 및 운영  
비용 지급, 고객 명의로 이루어지는 급여 및 기타 일상 비용 지급 등을 포함한 고객 자체의  
운영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요청 시 고객은 환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정 또는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은행에 즉시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환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좌 및 서비스 제공 여부는 은행이 단독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다른 금융 기관에 대한 환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중첩 관계"), 해당 고객은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은행의 지시서를 따라야 합니다.

#### 4 스위프트(SWIFT)

4.1 서비스 기본 계약서 2 조(권한)의 목적을 위해, 고객이 은행인 고객은 인증된 SWIFT 메시지를 사용하여 은행(Bank)에 선임, 권한에 대한 추가 조건 및 제한, 수권인 변경 및 삭제를 통지하고, 은행은 고객(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SWIFT 메시지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법인) 명의로 발행된 메시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4.2 은행인 고객은 인증된 SWIFT 메시지를 이용하여 은행(Bank)에 계좌 개설 및 해지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 5 진술, 보장 및 확약

5.1 고객은 다음을 진술, 보증 및 확약합니다.

(a) 금융 범죄의 탐지,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 정책, 절차 및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b) 관련 금융범죄법률 및 고객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관할권의 기타 필수 요건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고객 제 3 자(Customer Third Parties)와 관련하여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고 KYC 문서를 유지합니다.

(c) 제재 대상자의 서비스 및 계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으로 합당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d) 은행이나 그룹 계열사와 관련된 거래 또는 메시지에 대한 정보 중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가 알았다면 해당 거래 또는 메시지가 제제 대상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가 협력 또는 상호작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경고하였을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류하거나, 삭제, 또는 허위진술하지 않습니다.

(e) 관련 금융범죄법률 및 고객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관할권의 기타 필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고객 제 3 자와의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f) 고객은 Shell Bank 가 아니며, Shell Bank 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5.2 고객은 모든 거래문서가 약정에 따라 해지 또는 만료될 때까지 본 5 조의 진술, 보증 및 약속이 모든 면에서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증하고 약속합니다.

5.3 본 5 조의 위반은 거래문서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고객이 본 5 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지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은행에 통지합니다.

## 6 법규준수

은행은 금융 기관으로 인가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관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지역에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은 법규준수 활동이 고객이 은행과 하는 거래 또는 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은행은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에 대한 정보, 계좌를 통하여거나 FI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 및 기타 업무를 진행하는 법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정보를 은행 또는 그룹 계열사에 제공 또는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정의

- 거래 은행 서비스(Correspondent Banking Services)는 무역 금융, 현금 청산, 유동성 관리, 고객 또는 기타 제 3 자의 고객을 대신한 단기 차입 및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금융 기관이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고객 제 3 자란 고객의 직원, 계약자, 대리인 및 기타 인력, 고객의 고객 및 그 대리인, 거래 관계를 체결한 기타 금융 기관을 의미합니다.
- FI 서비스란 금융 기관인 고객과의 거래문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금융 기관이란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 기관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 기본 계약서란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와 함께 발행된 거래신청서(Relationship Acceptance Form)와 서비스 변경신청서(Service Amendment Form)에 언급되어있는 고객 팩에 포함된 거래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비스 기본 계약서를 의미합니다.